

대구광역시달서구 자원봉사센터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

2024. 7. 19.

복지문화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안 건 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원봉사센터 재위탁 동의안
- 제 출 자: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(행복나눔과장)
- 제출일자: 2024. 7. 5.(금)
- 회부일자: 2024. 7. 5.(금)
- 상정 및 의결: 제306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(2024. 7. 19.)

2. 제안이유

- 달서구의 자원봉사활동을 지원·장려하기 위하여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」에 따른 달서구자원봉사센터의 위탁운영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
-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하여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」 제8조 및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」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대상시설

시설명	소재지	면적	이전일 (최초개원)	직원수	현 위탁사항	
					위탁기간	수탁기관
달서구 자원봉사센터	진천로9길 33 진천동 복합청사 4층	346.44m ²	2014. 8. 4 (1998. 7. 16)	9명	2022. 1. 1. ~ 2024. 12. 31 (3년)	전석복지재단

나. 위탁개요

○ 위탁내용

- 지역의 기관·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
-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·홍보
-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
-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·보급 및 운영
-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
-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」에 따른 재능기부 활성화에 관한 사항
- 그 밖에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

○ 위탁기간: 3년(2025. 1. 1. ~ 2027. 12. 31.)

○ 수탁자 선정방식: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심사위원회 심사·선정

4. 관련근거

- 「자원봉사활동기본법」 제19조
-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」 제8조
-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4조, 제6조 및 제7조

5.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

- 본 동의안은 달서구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위탁계약기간(2022년 1월 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)이 만료됨에 따라 자원봉사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,
- 위탁업체는 비영리법인으로 하도록 한 「자원봉사활동기본법」 제19조 제1항 후단에 따르고,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도록 한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9조와

위탁기간을 3년으로 한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」 제8조제2항에 따른 것으로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.

- 진천동행정복지센터 4층에 위치한 자원봉사센터는 비상근 센터장 1명을 포함한 9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, 국·시비 보조사업으로 2024년 6억 3,707만원(구비 5억 5,933만원)이 편성되어 있음.
- 현재 교육사업, 홍보사업 외에 달서구자원봉사특성화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, 이에 따라 정책자문위원회의 전문성·자율성에 대한 걱정 의견과 민간위탁이 전문인력 확보 및 현장수요 반영이 쉽다는 검토의견을 고려할 때 위탁·운영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됨.

구분	2021.12	2022.12	2023.12	2024.6	비고
등록인원	178,185	183,780	190,094	193,126	
봉사시간	583,286	648,719	853,836	414,352*	

* 2024년 6월말 등록된 봉사시간으로 반영되지 않은 봉사시간이 있음.

** 2023년과 2021년 비교하면 2년 간 등록인원 11,909명, 봉사시간 270,550시간 증가함

- 따라서 본 동의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, 민간위탁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6. 질의·답변 및 토론 요약: “특이사항 없음”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